

캡스톤디자인 운영 규정(안)

- 제정 : 2020. 9. 1.
- 개정 : 2022. 3. 1.
- 개정 : 2023. 6. 1.
- 개정 : 2024. 9.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교육을 통하여 배운 이론을 활용하여 산업체(사회)가 필요로 하는 제품(과제)의 기획, 설계, 제작하는 전 과정을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창의적 미래 인재 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캡스톤디자인(Capstone Design)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캡스톤디자인”은 정규교과목으로서 시제(작)품 제작 등을 위한 실험실습비 또는 교육프로그램 지원비가 지급되고, 팀 과제로 1개 학기 이상 운영되어 목적에 맞는 결과물을 도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2. “과제수행팀”은 캡스톤디자인에서 부여받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복수의 학생으로 결성된 팀을 말한다.
3. “지도교수”는 과제수행팀 단위로 캡스톤디자인을 지도하는 교수를 말한다.
4. “참여기업”은 산학협력을 목적으로 캡스톤디자인에 협력하는 업체를 말한다.
5. “캡스톤디자인 과제”는 과제수행팀이 캡스톤디자인에서 수행한 과제를 말한다.
6. “캡스톤디자인 지원비”는 캡스톤디자인 과제를 수행하는데 지원되는 교비 또는 국고 예산 등을 말한다.
7. “운영위원회”는 캡스톤디자인 과제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학과에 설치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자율 운영”이란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중 실험실습비 또는 교육프로그램 지원비를 지원받지 않고 학과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제3조(과제수행팀) ① 과제수행팀은 2개 학기 이상 수료한 복수의 재학생으로 구성하며 지도교수 및 산업체(참여기업)의 멘토링을 받아서 과제를 수행한다.

② 과제수행팀은 캡스톤디자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도교수에게 과제 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신청해야 한다.

③ 과제수행팀은 캡스톤디자인 종료 후 목적에 맞는 결과물과 결과보고서 등을 지도교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캡스톤디자인 과제수행팀은 성과 공유를 위하여 교내작품전에 성과물을 출품해야 한다.

제4조(지도교수) 캡스톤디자인 작품전을 시행하는 학과의 지도교수는 캡스톤디자인 작품전 계획서를 제출하고, 과제수행팀이 지원비를 활용하여 과제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제5조(참여기업) ① 참여기업은 대학과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캡스톤디자인을 위한 협력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은 캡스톤디자인 산업체 지원확인서를 제출한다.

③ 참여기업은 캡스톤디자인 결과물에 대하여 특허나 실용신안을 대학과 공동으로 출원할 수 있다.

제6조(캡스톤디자인 과제) ① 캡스톤디자인 과제는 과제수행팀이 참여기업과 논의하여 도출하거나,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② 캡스톤디자인 과제 중 지원비를 희망하는 과제는 물품구입 신청서를 산학협력팀에 제출해야 한다.

③ 캡스톤디자인 작품전 입상팀은 캡스톤디자인 작품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팀에 제출한다.

④ 캡스톤디자인 결과물은 학과에서 1년간 보관해야 하며 산업체(참여기업)의 요청에 따라 반출할 수 있다.

제7조(캡스톤디자인 지원비) ① 캡스톤디자인 지원비는 순수 재료비(소모품비)로만 사용될 수 있다. 단, 기자재 임차료, 시제품 제작비의 경우 산학협력처장의 동의를 얻어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도교수는 구입한 물품에 대한 검수조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팀에 제출해야 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학과에서 운영하며 캡스톤디자인 과제가 목적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캡스톤디자인 과제 신청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캡스톤디자인 지원비에 관한 사항
3. 캡스톤디자인 작품전 시행 및 과제 평가에 관한 사항
4. 캡스톤디자인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5. 기타 캡스톤디자인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평가) 캡스톤디자인 평가는 운영위원회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다.

제10조(시상) 캡스톤디자인 작품전에 출품한 작품 중 우수작품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11조(자율 운영) 졸업학기 이전에 개설하는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은 실험실습비 또는 교육프로그램 지원비를 지원받지 않고 학과에서 강의 형식을 유연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졸업학기에 운영하는 교과목은 제외

제12조(기타) 캡스톤디자인 운영과 관련된 기타 사항은 본교 학칙을 준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일 이전에 시행한 것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일 이전에 시행한 것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